

제재내용 공시

1. 조합명 : 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

2. 제재조치(요구)일 : 2026. 04. 30.

3. 제재조치(요구)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임원	경고(1명)
직원	경고(4명)

※ 향후 관련 내규 등에 따른 이의신청(재심) 처리결과에 따라 제재조치 내용이 변동될 수도 있음

4. 제재대상 사실

공동대출 심사 및 사후관리 소홀

○ 기업시설자금대출을 취급하면서 심사역심의회 및 대출심사위원회 운영을 소홀히 하였으며, 공동대출에 대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였음.

< 관련법규 >

○ 「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」 제1편 제42조(승인대상 대출금), 제44조(승인신청서 제출서류), 제45조(승인대출금 업무처리), 제48조의3(심사대상), 제48조의4(운영), 제48조의6(업무처리), 제54조(심사사항), 제397조(사후관리), 제401조(구성원), 제403조(개최), 제404조(계약내용의 변경 등)